

##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경인지방통계청장

### 1. 합격자 명단(1명)

부서(모집 단위)	응시번호	성명	연락처 뒷번호
사회조사과	S-012	배○경	2**8

### 2. 직종 및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

직종	계약방법	채용일	근로조건	임금(호봉제)
통계조사관	근로계약 (만 60세 정년)	2024. 05. 02.(목)	1주 40시간, 주5일 근무	금 2,178,650원 (세금 공제 전) - 기본급: 1,838,650원 - 정액급식비: 140,000원 - 표본관리비: 200,000원 (법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)

○ 담당업무: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 
(경상조사,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 전반)

○ 수습기간: 2024. 05. 02. ~ 2024. 08. 01. (3개월)

-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

### 3. 제출서류 / ※제출기한: 2024. 4. 23.(화)

- 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【붙임1】 서식
  -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- 【붙임2】 서식
  - ③ 공정채용확인서 - 【붙임3】 서식
  -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- 【붙임4】 서식
  -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- 【붙임5】 서식
  -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이중 취업 여부 확인용)
  - ⑦ 최종학력증명서 (인사기록카드 작성용)
  - ⑧ 사진(3\*4) 1매 (인사기록카드 작성용 및 공무원원증 발급용)
  - ⑨ 본인 통장 사본 1부 (보수 지급용)
- (⑦~⑨번은 첫 출근일에 제출하여도 무방)

### 4 보내실 곳: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

담당자	주소	연락처	이메일
신여진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5동 7층(중앙동 1) / 우편번호: 13809	전화: 02-2110-7614 팩스: 02-2110-0760	syj0210@korea.kr

※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 시,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후 첫 출근일에 원본 제출

### 5. 문의사항: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신여진(☎ 02-2110-7614)



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<b>공직자로 재직</b>한 경험이 있는지                 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2. ‘<b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b>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                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             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다. 가혹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                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공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b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b>된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b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b>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b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b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b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b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3. 권익위법( ‘16.3.29. 제14145호’) 시행(’ 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원자 (서명)